

한국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 II 민생, 빛의 수렁에 빠지다

- 02 요약
- 03 서론.
한국가계 빛의 수렁에 빠지다
- 12 본론.
빛의 수렁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탈적 금융의 덫
- 30 결론 및 과제.
빛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요약

1. 서론. 한국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한국의 가계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소득에 부침을 겪었던 것이 사실임. 그런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개별 가계 모두는 일정정도의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이는, 교육이나 주거 등 가계 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일정수준 이상의 비용이 소득에 관계없이 존재하기 때문.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 때에도 불가피 하게 일정정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이를 부채로 메우는 현상이 나타남. 문제는 중산층 이하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많은 경우 제 2금융권의 신용대출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임. 바로 그 때 서민들은 고금리, 불완전 판매, 과잉마케팅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약탈적 속성과 직면하게 되며, 가계부채가 악성화 되는 말 그대로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음.

2. 본론. 빚의 수렁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탈적 금융의 덫

가계생활 유지를 위해 빚의 수렁에 빠진 개별 가계들은 개인금융부채가 1천조 원에 달해 가계부실 현실화가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도 각 이익을 내는 것에만 몰두하는 각 금융기관과 마주하게 됨. 특히 이들 금융기관들은 ① 대출 금리 및 수수료를 높게 유지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② 과도한 마케팅으로 마진을 최대한 높이는 상품을 판매한 후 리스크는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상품의 경우 불완전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③ 40%가 넘는 고금리 영업을 하는 대부업의 경우 케이블 TV에 광고를 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가 미숙하여 많은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민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3. 결론. 빚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가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지나친 이자 및 수수료·과도한 마케팅 및 불완전판매·불법 대부업 등으로 인해 악성화 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가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①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내리고, ②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에게 주어지고 있는 특혜금리를 당장 중단해야함. 또한 ③ 신용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④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야함. 더불어 ⑤ 금융소비자 보호청의 설립 뿐 아니라 ⑥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권 및 손배·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 기조를 업계 리스크관리 일변도에서 소비자 보호로 전환해야함. 또한 ⑦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⑧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가계들의 가치분소득이 늘어나야 부채상환능력도 함께 증대될 수 있는 만큼,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서론, 한국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1. 서론, 한국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_1)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0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개인금융부채가 무려 9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개인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상거래 신용 51조원과 기타금융부채를 포함하면 개인부문 총 부채는 996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말 그대로 부채 1천조원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인 1,172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렇게 GDP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한 가계부채는 그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급증하는 부채를 가계의 상환 능력(소득)이 따라주지 못한 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표1> 개인 금융 부채 잔액¹⁾

(연말,십억원)

	2005 ^r	2006 ^r	2007 ^r	2008 ^r	2009 ^r	2010 ^p
대 출 금	601,237.4	670,338.1	743,410.9	801,736.0	859,184.1	932,391.4
예금취급기관대출금	475,669.1	529,644.6	571,049.8	620,775.9	660,111.8	717,555.6
보 험 대 출 금	58,433.6	62,672.5	70,359.8	77,589.6	80,244.5	82,297.1
여신전문기관대출금	25,945.6	33,050.8	44,289.0	47,720.7	53,449.6	66,449.0
공 적 금 융 대 출 금	22,642.1	25,021.1	28,232.8	31,179.4	31,419.0	28,890.8
기 타 대 출 금 ¹⁾	18,546.9	19,949.0	29,479.5	24,470.4	33,959.3	37,198.8
정 부 융 자	658.4	728.6	751.0	610.0	1,775.2	4,892.4
상 거 래 신 용	41,712.6	42,276.0	45,814.1	49,303.6	51,323.8	51,771.2
기 타 금 융 부 채	3,505.3	3,892.9	5,340.8	7,415.4	7,133.8	7,597.7
합 계	647,113.6 (10.4)	717,235.6 (10.8)	795,316.9 (10.9)	859,065.0 (8.0)	919,417.0 (7.0)	996,652.6 (8.4)

주 : 1) 증권기관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대출금("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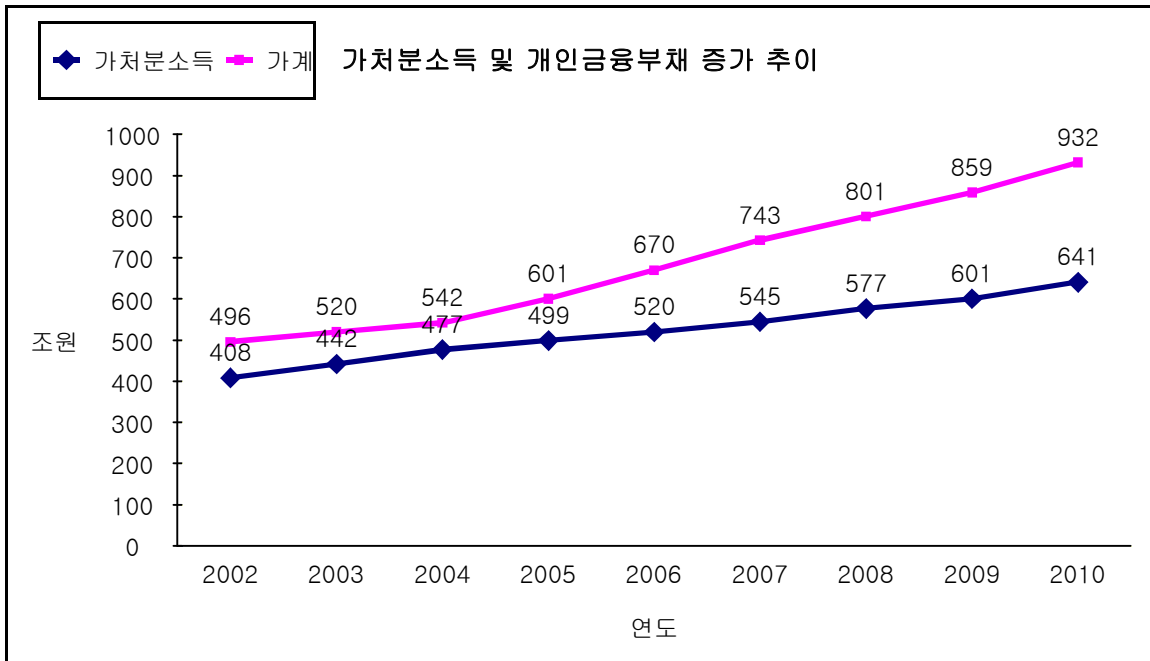
2) ()내는 전기말대비 증감률(%)

이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도 잘 드러나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5% 증가하였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6%에 그쳐 2009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43%에 이르렀다.²⁾ 2000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62%나 증가한 것이다.

1 <2010년 중 자금순환 동향> 한국은행 2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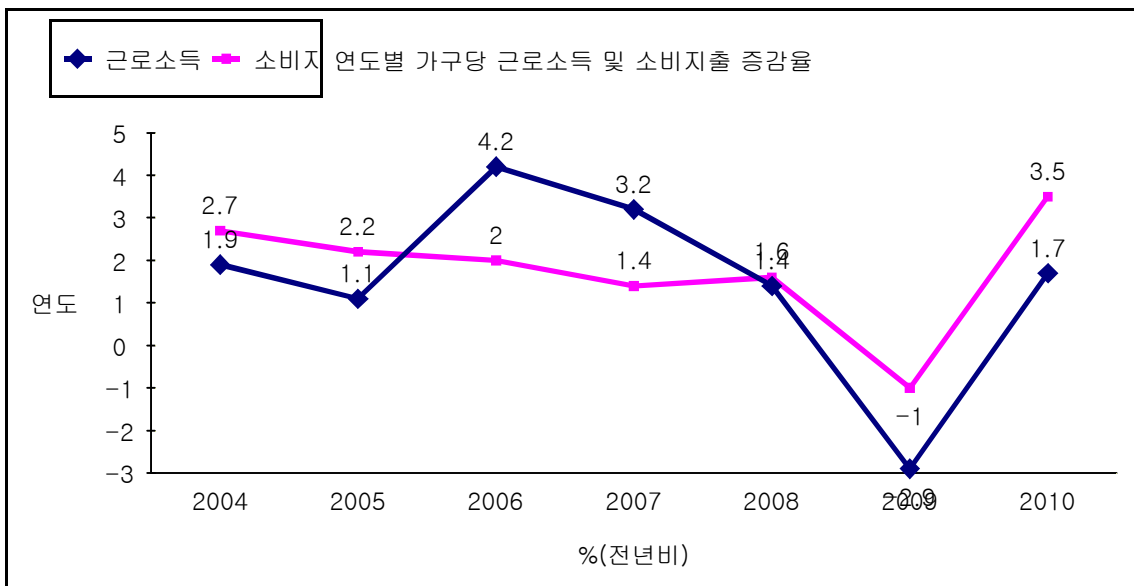
2 <가계부채에 관한 토론> 윤종원, 한국경제포럼 3집 3호

<표2> 가치분소득 및 개인금융부채 증가 추이³



가치분소득이 늘지 않고 있음에도 개별 가계가 이처럼 부채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⁴ 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소득 증가를 뛰어넘은 소비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표3> 연도별 가구당 근로소득 및 소비지출 증감률(전년비)⁵



3 개인금융부채 <2010년 중 자금순환 동향>, 가치분소득 <개인부문 국민가치분소득> 한국은행

4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03년 152조원에서 2010년 284조로 2배가량인 132조 증가함.

5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실질)_통계청KOSIS, 비 근로자 가구 제외

2)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

<표3>을 보면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상위에 있던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급감해 소비지출과 증가율이 역전된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별가구 들이 일정정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4>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근로소득 및 소비지출 증감률(전년비)⁶ (%)

월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항목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가구				
전체 평균	근로소득 (원)	6.5	5.9	6.1	-0.2	4.7
	소비지출 (원)	4.4	3.8	6.3	1.3	5.8
1분위	근로소득 (원)	6.9	-0.3	7.0	0.1	6.2
	소비지출 (원)	3.8	1.0	10.0	-1.4	8.2
2분위	근로소득 (원)	4.3	3.1	5.3	3.4	8.5
	소비지출 (원)	2.5	2.1	9.5	-0.6	9.5
3분위	근로소득 (원)	7.8	5.4	5.5	0.8	3.5
	소비지출 (원)	6.5	4.3	4.3	1.0	5.7
4분위	근로소득 (원)	8.2	4.9	6.7	-0.2	1.8
	소비지출 (원)	5.3	3.4	8.0	1.5	4.4
5분위	근로소득 (원)	5.5	9.0	6.2	-2.0	5.6
	소비지출 (원)	3.5	5.6	3.4	3.2	4.3

흥미로운 점은 소득에 감소에도 소비지출 증가하는 현상이 고소득 계층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 분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4>를 보면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 이후,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일부 감소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였는데, 2010년의 경우 1분위의 소비지출과 5분위를 비교했을 때, 1분위의 증가율이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월 소득 5분위의 근로소득증가율 평균은 4.9%이며, 소비지출증가율은 4.0%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에 비해 0.9% 높았으나, 월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소비지출의 증가율 폭이 근로소득의 증가율을 넘어섰다. 위와 같은 결과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개별가구들이 일정정도 이상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소비지출은 일정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 줄지 않는 소비지출, 교육·주거 등 가계생활 유지를 위한 것

그렇다면 개별가구들이 이처럼 일정 수준의 소비지출을 유지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표5>에 따르면, 개별 가구들은 음식·숙박(13.16%), 교육(12.45%), 식료품(12.26%), 교통(11.98%), 주거(9.36%) 등 의식주 및 교육과 관련해서 소비의 60%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

6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명목)_통계청KOSIS

러났다. 더불어 <표4>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2009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비교해서 식료품, 음식·숙박 등의 소비가 줄고 교육과 주거의 비중이 늘어나 소득의 감소에 따라 다른 소비를 줄여 교육과 주거의 소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표5> 연도별 가구당 소비지출 구성비(실질, %)⁷

가계수지항목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가구				
소비지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1.식료품·비주류음료	13.69	13.32	13.50	12.72	12.26
02.주류·담배	1.48	1.40	1.38	1.35	1.32
03.의류·신발	6.51	6.50	6.50	6.23	6.40
04.주거·수도·광열	9.52	9.05	9.09	9.27	9.36
05.가정용품·가사서비스	3.69	3.73	3.43	3.57	3.79
06.보건	5.78	5.89	5.95	6.37	6.56
07.교통	12.68	12.78	11.94	12.78	11.98
08.통신	6.90	7.04	6.93	6.95	7.08
09.오락·문화	5.84	6.21	6.32	6.37	6.97
10.교육	11.25	11.47	12.57	12.77	12.45
11.음식·숙박	14.10	14.26	14.19	13.35	13.16
12.기타상품·서비스	8.56	8.34	8.20	8.27	8.68

즉,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에는 사치품 구입이나 기타 상품 구입 등의 증가와 같은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해결과 교육에 대한 지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특히 개별 가계들은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와 교육에 대한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심지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부분의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주거의 경우 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교육여건에 따라 주택가격이 좌우됨을 고려할 때, 개별가계들이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소득을 집중하고 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5-1> 주택소유가구의 부채구조 개요⁸

분위	소득대비 총부채 잔액 비율 300%이상 가구 비중	가계수지 적자 가구 비중
1분위	50.0%	21.8%
2분위	24.2%	4.0%
3분위	17.2%	3.8%
4분위	14.8%	2.7%
5분위	14.0%	4.0%

7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실질)_통계청KOSIS

8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에 관한 토론> 장민 한국경제포럼 제3집 3호

<표5-2> 소득10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⁹

(단위 : 원,%)

구분	1989년	등록금 비중	2008년	등록금 비중
1분위	3,033,396	47.8	12,682,242	65.6
2분위	4,839,156	30.0	21,291,978	39.1
3분위	5,831,148	24.9	26,992,206	30.8
4분위	6,734,484	21.5	32,443,830	25.6
5분위	7,656,672	19.0	37,633,206	22.1
6분위	8,677,164	16.7	43,153,608	19.3
7분위	9,946,764	14.6	49,389,252	16.8
8분위	11,648,316	12.5	57,602,832	14.4
9분위	14,459,136	10.0	71,131,896	11.7
10분위	23,748,576	6.1	112,726,602	7.4
평균	9,659,256	15.0	46,510,548	17.9

실제로 <표5-1>과 <표5-2>에 따르면, 개별가구들이 교육과 주거 등에 일정정도 이상의 소비를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2008년 3분위 가구의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3%인데 반해, 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7.4%에 불과한 것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채 비율 300% 이상 가구 및 가계수지 적자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개별가구들은 특히 교육과 주거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정도 이상의 소비지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¹⁰

(%, 명, 만원)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만원,A)	2,881.0	1,022.1	1,796.9	2,424.7	3,726.3	5,880.1
가구연소득(만원,B)	3,420.9	1,023.2	2,151.8	3,081.3	4,141.8	7,272.8
소득 대비 금융부채(A/B)	0.8	1.0	0.8	0.8	0.9	0.8

<표7> 소득계층별 부채부담가구의 비중(%)¹¹

소득 대비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1배 미만	75.2	72.4	72.8	68.0	71.0	73.6
1~3배 미만	14.1	22.3	22.1	27.8	26.3	21.4
3~5배 미만	4.8	3.8	4.0	2.6	1.8	3.0
5배 이상	5.9	1.5	1.2	1.6	0.9	2.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주: 각 소득계층별로 특정 소득대비 부채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을 계산

9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가계조사(도시,2인이상,1963~),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89년 1/4분기~4/4분기) 가계조사(도시,2인이상,1963~),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08년 1/4분기~2/4분기)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08.

10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유경원·이혜은 2009.3

11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유경원·이혜은 2009.3

이처럼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일정정도의 소비지출을 유지하다보니, 소득과 자산이 낮은 중·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고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압도하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분위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비해 5배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5.9%에 이르며, 중산층 이하인 1~3분위 부채가 소득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높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가 4~4.8%에 이르는데,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가 주로 0~3배미만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가 높은 가계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가계생활 유지위해 제2금융서 부채 끌어들이는 개별가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식주 및 교육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요구되어지는 소비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중산층 이하 가계들의 경우 부채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표 8-1>에 따르면 이때 많은 경우 신용대출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별 담보 및 신용대출의 용도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48.8%가 거주주택의 마련 또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인데 반해 신용대출은 대출의 74.8%가 사업자금 마련 및 생활비로 실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특히 신용대출은 소득과 자산이 낮을수록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표8-2>를 보면 소득 1분위의 신용대출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이지만 소득 5분위는 9.5%이고, 순자산 1분위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전체에서 32.1%를 차지하고, 순자산 5분위는 5.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이 낮은 중·저소득층은 신용대출을 통해 소비지출을 유지·지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1> 가구특성별 담보 및 신용대출의 용도별 비중¹²

(%)

가구특성		전체	거주주택 마련	거주주택외 부동산마련	전월세 보증금마련	부채 상환	사업자금 마련	기타 ¹⁾	
									담보
전체	담보	100.0	37.5	21.3	4.5	3.2	26.0	7.6	
	신용	100.0	6.9	4.5	8.5	5.4	42.7	32.1	
순자산 5분위별	1분위	담보	100.0	6.5	19.0	7.2	6.7	50.9	9.7
		신용	100.0	1.2	0.2	5.7	11.4	54.7	26.8
	2분위	담보	100.0	48.9	4.4	16.1	3.8	16.9	9.9
		신용	100.0	6.7	2.8	14.8	4.1	38.2	33.4
	3분위	담보	100.0	56.2	8.9	5.7	6.0	14.2	8.9
		신용	100.0	11.3	3.1	18.0	2.7	33.6	31.3
	4분위	담보	100.0	46.3	18.7	3.3	1.9	23.0	6.9
		신용	100.0	10.0	4.8	8.3	3.8	27.8	45.2

12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한국은행 2010.12.29

	5분위	담보	100.0	31.1	30.2	2.0	2.1	28.0	6.6
		신용	100.0	8.7	10.9	2.4	2.2	47.0	28.8

1) 증권투자자금, 결혼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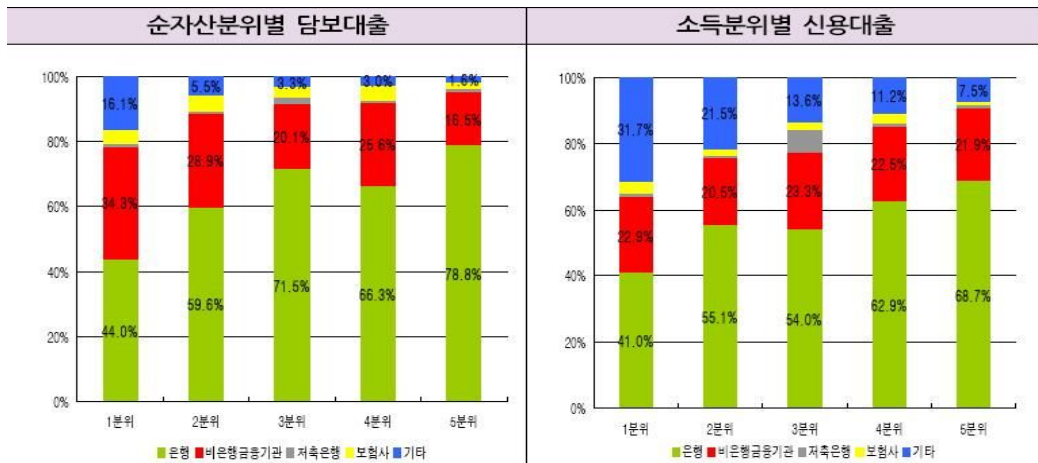
<표8-2> 가구특성 및 항목별 부채보유 비중¹³

(%)

가구특성		부채총액							
		금융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금융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가 임대	자카이의 부동산임대		
전체		100.0	67.6	67.5	54.6	10.6	32.4	7.3	25.1
소득 5분위 별	1분위	100.0	61.1	61.0	38.7	15.6	38.9	18.0	20.8
	2분위	100.0	67.3	67.2	46.9	14.8	32.7	14.9	17.8
	3분위	100.0	67.2	67.1	54.1	10.4	32.8	12.3	20.5
	4분위	100.0	69.0	68.9	55.8	10.8	31.0	6.2	24.8
	5분위	100.0	67.8	67.7	57.1	9.5	32.2	3.8	28.4
순자산 5분위 별	1분위	100.0	94.9	94.7	54.3	32.1	5.1	0.9	4.2
	2분위	100.0	86.8	86.4	58.6	22.8	13.2	5.4	7.9
	3분위	100.0	79.3	79.2	64.4	11.8	20.7	4.6	16.1
	4분위	100.0	69.9	69.9	59.8	8.4	30.1	7.0	23.1
	5분위	100.0	55.7	55.7	49.4	5.5	44.3	9.5	34.7

그런데 <표9>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낮을수록 은행권 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9> 부채보유가구 대출기관 비중현황¹⁴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10년 가계금융조사

13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한국은행 2010.12.29

14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와 금융업권별 자산 건전성 점검> 김봉식 수석연구원, 한국기업평가 2011.03.29에서 재인용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11년 3월 24일 현재 시중 5개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62조 1783억 원으로 2010년 8월말 보다 4조 7,979억 원 급감했다. 더불어 이는 2008년 말 71조 3530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9조 1,747억 원 줄어든 수치다.¹⁵ 이러한 결과는 물론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진행된 DTI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들이 담보대출에 몰린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가 상존하고,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된 만큼¹⁶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보다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대출은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대부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2009년 12월 기준 3.2조원 이었던 신용대출이 2010년 12월 4.6조원으로 1년 만에 44%가 증가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 달 만에 3000억 원 증가하였다.¹⁷ 더불어 <표10>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수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1억 1천만 매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현금대출도 2010년을 기준 1년 만에 7.1조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전년에 비해 1천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7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점인데, 이는 카드론이 전년에 비해 무려 42.3% 증가한 23조 9천억 원을 기록한 것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또한 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감소추세에 있던 등록 대부업체 수가 2010년 들어 증가 하면서 2010년 기준으로 2009년 말 대비 거래자수는 13.1%, 대출규모는 15.3% 증가했고, 2007년 말과 비교하면 대출 규모가 27억 원 증가하였다. 2010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3.6%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0> 신용카드 발급수 추이¹⁸

(만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발급수	9,433	8,802	8,604	9,090	8,956	9,624	10,699	11,659
개인	9,196	8,567	8,351	8,797	8,622	9,195	10,225	11,103
법인	237	235	253	293	334	429	474	555

<표11> 대부업시장 규모 추이¹⁹

구 분	'07.9말	'08.9말	'09.3말	'09.12말(A)	'10.6말(B)	증감률 (B-A)/A
등록업체수(개)	18,197	16,120	15,723	14,783	15,380	597(4.0)
거래자수(명)	893,377	1,307,271	1,431,656	1,674,437	1,893,535	219,098(13.1)
대출금액(억원)	41,016	56,065	51,576	59,114	68,158	9,044 (15.3)

15 <시중銀 '편한 돈벌이' 치중...서민·중소기업 대출 외면> 박제현 기자 경향신문 2011.03.28

16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윤석현 한국경제포럼 제2집 제3호

17 저축은행 가계 신용대출 추이(조원) '09.12(3.2), '10.6(3.6), '10.12(4.6), '11.1(4.9) 금감원 2011.03.31

18 <2010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금융감독원 2011.3.10에서 채편집

19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2010.11.3

<표12>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²⁰

(단위 : 조원, %)

구분	'09년	'09년				'10년	'10년				증감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 품 별	신용판매	372.6	87.1	91.4	94.2	99.9	412.1	99.9	99.1	104.4	108.8	10.6
	(일시불)	300.9	68.6	74.6	77.1	80.6	329.8	78.5	79.9	84.8	86.6	9.6
	(할부)	71.7	18.5	16.8	17.1	19.3	82.3	21.3	19.3	19.5	22.2	14.8
	현금대출	98.2	24.8	24.3	24.4	24.7	105.3	24.9	26.0	26.7	27.6	7.2
	(현금서비스)	81.4	21.3	20.4	19.9	19.8	81.3	19.8	20.2	20.4	20.9	△0.1
	(카드론)	16.8	3.5	3.9	4.5	4.9	23.9	5.1	5.8	6.3	6.7	42.3
기 관 별	전업사	232.7	52.8	56.1	58.5	65.3	287.6	66.9	70.0	73.1	77.7	23.6
	겸영은행	238.1	59.1	59.6	60.2	59.3	229.8	57.8	55.1	58.1	58.7	△3.5
이용실적계		470.8	111.9	115.7	118.6	124.6	517.4	124.7	125.1	131.1	136.4	9.9

이처럼, 소득 중·하위층 가구나, 상위층 가구 모두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소득에 부침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개별 가계 모두는 일정정도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이나 주거에는 소득 하위 층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줄어들 때조차 불가피 하게 일정정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이를 부채를 메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중산층 이하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이 때, 많은 경우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제 2금융권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중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대부업을 포함한 제 2금융권의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그런데 바로 이 때 서민들은 고금리, 불완전 판매, 과잉마케팅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약탈적 속성과 직면하게 되며, 가계부채가 악성화 되는 말 그대로 빛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0 <2010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금융감독원 2011.3.10

빛의 수렁 속에서 서민을 기다리고 있는 악탈적 금융의 덫

본론, 빛의 수렁 속에서 서민을 기다리고 있는 악탈적 금융의 덫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저소득층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를 늘리면서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때 서민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악탈적 관행·속성과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금융시장의 악탈적 관행 혹은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1. 높은 이자 2.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 판매 3. 불법 사채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자폭리

① 예금은행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1년 2분기 기준 약 7.33%에 이르고 있다. 비슷한 수준(7.24%) 이었던 2007년 1분기의 경우 기준금리가 4.5%에 달했던 것에 비해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가 3%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예금은행 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13> 분기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²¹

연도	날짜	금리	연도	날짜	금리
2006	2월 9일	4	2008	11월 7일	4
	6월 8일	4.25		12월 11일	3
	8월 10일	4.5	2009	1월 9일	2.5
2007	7월 12일	4.75		2월 12일	2
	8월 9일	5	2010	7월 9일	2.25
2008	3월 7일	5	2011	11월 16일	2.5
	8월 7일	5.25		1월 13일	2.75
	10월 9일	5		3월 11일	3
	10월 27일	4.25			

<표14> 분기별 예금은행 일반 신용대출 금리 추이(%)²²

년\분기	1	2	3	4
2006	6.78	6.98	6.97	6.82
2007	7.24	7.42	7.42	7.75
2008	7.91	8.19	8.75	8.91
2009	6.88	6.74	7.25	7.51
2010	7.49	6.78	7.22	7.27
2011	7.44	7.33		

21 한국은행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을수록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이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②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 대출 금리가 13.36%였으나, 올해 들어 15%로 급증했으며 지난 2월에는 15.22%까지 올랐다. 이는 예금은행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저축은행별·취급 상품별로 나누어 보아도 금리 10% 이하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많게는 39% 가까운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5> 분기별 저축은행 대출금리 변동 추이²³

년 \ 분기	1	2	3	4
2004	12.76	12.22	11.76	11.26
2005	10.74	10.99	11.04	11.05
2006	10.96	10.90	10.88	10.63
2007	10.76	10.85	11.00	11.09
2008	11.93	11.63	12.17	13.19
2009	12.59	11.93	11.74	11.74
2010	12.73	12.31	12.63	13.36
2011	15.00	15.22		

<표16>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 상품별 평균금리²⁴

저축은행	상품명	등급구간별 평균금리(%)				대출기간(년)
		1~3	4~5	6~8	9~10	
더블유(W)	AUTO피노키오론	18	18	22	24	5
더블유(W)	피노키오론	17	20	30	-	5
민국	신용대출	11	15	18	-	1
솔로몬	와이즈W론	14.7	16	18.4	-	1~5
솔로몬	와이즈론	25.3	29.7	32.7	-	1~5
에가람	라이브 스페셜론	15	25	33	37.5	최장 5년
우리금융	엔젤론	19.9	34.9	39.5	-	1~2
우리금융	해피론	12	12.5	13	-	1~2
제일	인터넷대출	10	21	31	-	1
제일	카드론	10	21	31		1
제일2	카드론	11	15	17	19	1
중앙부산	신용대출	8.5	11.8	13.5	15	1
현대스위스	스피드론	23.2	24.6	26.5	-	2
현대스위스	알프스론	21.7	30.7	38.7	-	5
현대스위스	탑클래스	14.2	16.5	-	-	5
HK	119머니	17.4	27.4	31.9	38.9	1~4
HK	인터넷자동대출	17.4	24.9	31.9	-	2~3
고려	가이드론	15	25	33	37.5	최장5년
부산솔로몬	와이즈론W	14.8	16.1	18.6	-	1~5
부산솔로몬	와이즈론	25.7	29.8	32.5	0	01월 05일

2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신규취급액 기준

2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신규취급액 기준

24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금리 공시 2011.04.14일 확인

솔브레인	일반신용대출	11	12	-	-	1
토마토2	직장인신용대출	15.2	24.7	29.4	-	1~5
구미	신용대출	12	14.5	17	19.5	01월 03일
대백	직장인신용대출	9	10	11	12	5
대아	일반신용대출	11.5	27.2	-	-	1
대원	일반신용대출	11.5	27.2	-	-	2
드림	신용대출	8.5	12.5	15.5	21.5	1~3
오성	OS론	15.2	18.6	20.5	23.7	1
유니온	일반신용대출	10	11	12	불가	1
경기솔로몬	와이즈론	25.7	29.8	32.5		1~5
경기솔로몬	와이즈W론	14.8	16.1	18.6		1~5
모아	모아론	16	29	38	-	1~2
부림	일반신용대출	8	10	11	-	1
세람		10.9	11.4	12.0	12.5	1~5
세람	신용대출	10.9	11.4	12.0	12.5	1~5년
안국	신용대출	12	13	14	16	1
에이스	개인신용대출	11.5	13	14.5	19	5
토마토	직장인신용대출	15.2	24.7	29.4	-	1~5
평택	신용대출	13	15	16	-	1
현대스위스IV	탑클래스	14.2	16.4	-	-	5
현대스위스IV	알프스론	22	31.8	39.1	-	5
SC스탠다드	채우미	20.1	28.3	30.7	-	최대4
골든브릿지	신용대출	10.3	11.7	19	23	5
동양	신용대출	12	13	14	15	5
무등	신용대출	12	13	14	15	1
보혜	일반신용대출	8	10	12	14.5	1
스마트	신용대출	9	9.5	10	11	1
대전	신용대출	11	11.2	11.5	12	5
세종	인터넷신용대출(S-론)	19	34	36	-	6개월
한주	한주신용대출	9	12	13	15	5
스타	일반신용대출	10	10	12	-	1
스타	하이론	15	31.5	37.3	39	1
호남솔로몬	와이즈론	25.7	29.8	32.5	-	1~5
호남솔로몬	와이즈W론	14.8	16.1	18.6	-	1~5
도민	신용대출	13	13	15	15	1
청주	신용대출	13	14	15	20	5
하나로	뉴스타트론	16.7	32.7	39.5	-	5
현대스위스III	스피드론	23.1	24.6	26.3	-	2
현대스위스III	알프스론	23.4	35.1	39.6	-	5

③ 캐피탈

여신전문금융사 중 캐피탈사의 경우 상품별 평균 금리는 최저 15.4%에서 최대 34.2%까지 다양했으나, 이는 해당 금리의 상품이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 이용자들이 다양한 상품에 가입해 다양한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18>을 통해 보면, 실제 캐피탈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리 25%이상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캐피탈사가 고금리 상품 위주로 판매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는 만큼 저 신용계층이 캐피탈사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실제로 롯데캐피탈의 경우 실제금리 20.1~29.9 수준인 '그린(GREEN)' 상품에 고객들이 몰려(66.1%)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7등급(36.3%)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캐피탈의 경우에도 취급하는 4가지 대출 상품 중 금리 18.7~37.7% 수준인 자영업자 상품이 58.8%로 절반이상의 취급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당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은 주로(38%) 6등급과 7등급이었다.²⁵

<표17> 캐피탈사 금리현황(%)²⁶

캐피탈사명	최소금리	최고금리
롯데캐피탈	16.7	29.9
비에스캐피탈	24.7	28.5
아이비케이캐피탈	15.4	31.9
아주캐피탈	20.9	32.3
우리캐피탈	20.5	34.2
우리파이낸셜	22.7	31.1
하나캐피탈	20.6	29.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27.6	
한국씨티그룹캐피탈	20.1	30.4
현대캐피탈	25.6	31.3
NH캐피탈	21.0	31.9

<표18> 캐피탈사 적용금리대별 분포현황(%)²⁷

캐피탈사명	~10	10~	15~	20~	25~	30~	35~	평균 금리
	%	15%	20%	25%	30%	35%	40%	
롯데캐피탈	-	0.5	1.9	8.0	89.6	-	-	28.4
비에스캐피탈	-	-	0.5	3.7	95.8	-	-	29.2
아이비케이캐피탈	-	0.3	6.9	14.2	31.9	46.7	-	28.6
아주캐피탈	0.1	1.2	12.8	12.8	23.9	33.9	15.3	29.2
우리캐피탈	-	0.2	6.1	8.4	16.1	14.0	55.1	32.1
우리파이낸셜	0.1	7.3	15.5	25.3	33.9	18.0	-	25.5
하나캐피탈	-	2.5	26.9	22.0	24.4	24.2	-	24.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	0.6	13.9	8.1	41.8	35.6	-	27.6
한국씨티그룹캐피탈	0.3	1.6	11.4	9.9	51.5	25.3	-	27.5
현대캐피탈	0.8	2.8	14.0	7.7	56.5	18.1	-	27.7
NH캐피탈	1.1	1.1	17.6	13.6	27.2	39.4	-	26.3

④ 카드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상품에 따라 수수료율과 이자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저 6.9%~최고 29.2%의 수수료가, 카드론의 경우 최저 6.9%~27.9%의 이자율, 리볼빙의 경우 일시불과 현금서비스에 대해 7%~28%의 수수료율이 책정되어 있었다.

25 여신금융협회 신용대출상품 비교공시 2010.12~2011.2 실제금리, 여기서 취급비중은 전체 상품 기준

26 <여신금융협회 신용대출상품 비교공시> 2010.12~2011.2 신규취급실적 기준, 상품별 평균실제금리

27 <여신금융협회 신용대출상품 비교공시> 2010.12~2011.2 신규취급실적 기준

<표19> 카드사 상품별 수수료율(%)²⁸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할부 수수료율	카드론 이자율	리볼빙		연체 이자율
	수수료율			일시불	현금서비스	
롯데카드	7.89~28.19	9.9~21.9	7.8~24.9	7.89~25.39	7.89~28.19	25.0~29.0
비씨카드	15.00~25.92	11.0~18.5	-	-	-	25.0
산은캐피탈	-	11.0~ 18.9	-	-	-	18.0 ~ 25.0
삼성카드	7.90~28.50	10.0~21.8	7.90~24.90	7.90~25.90	7.90~28.50	24.0~29.9
신한카드	9.84~28.34	10.9~21.8	7.6~26.9	8.34~26.84	8.34~26.84	25.0~29.9
하나SK카드	6.90~27.90	9.2~22.9	6.90~26.90	5.90~26.90	6.90~27.90	25.0~28.0
현대카드	7.50~28.50	9.9~22.8	6.50~27.50	6.50~27.50	6.50~27.50	25.0~29.9
KB	7.90~28.80	10.0~21.4	7.50~27.90	7.90~28.80	7.90~28.80	24.5~29.9
SC제일은행	12.9~28.5	10.5~19.5	8.1~15.6	11~21.9	12.9~28.5	20~30
경남은행	14.00~24.99	12.0~19.0	8.87~22.87	9.95~20.95	14.95~25.95	25.0
광주은행	18.98~28.83	12.5~19.0	-	-	-	26~28
기업은행	7.9~27.7	10.7~21.0	7.00~13.74	9.9~21.9	13.9~25.9	24.0~28.0
농협중앙회	9.40~24.85	10.5~20.5	6.54~21.00	9.40~24.85	9.40~24.85	25.0
부산은행	11.95~27.70	17.5~19.0	-	9.50~22.00	11.95~27.70	25.0~28.0
수협중앙회	7.90 ~29.20	14.0~18.0	10.5~13.0	-	-	27.0
씨티은행	9.90~28.30	9.9~21.9	8.90~25.90	9.90~28.30	9.90~28.30	22.9~29.9
외환은행	7.79~28.74	9.9~20.9	7.50~24.90	7.15~26.50	7.79~28.74	23.0~29.0
우리은행	7.8~28.8	14.5~19.5	6.9~24.9	9.9~21.9	9.2~27.4	23~29
전북은행	14.00~26.31	12.0~18.5	4.75~27.50	19.0	14.0~26.31	25.0~28.0
제주은행	9.00~27.11	9.2~21.8	7.75~23.00	14.50~22.5	14.50~26.00	16.0~29.0

그러나 카드사도 캐피탈사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수료·금리대가 있기는 하지만, <표20>에 따르면 개별 카드사 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카드사 전체로 볼 것 같으면, 금리 24~28% 사이에 48%의 회원이 몰려 있다.

<표20> 카드사 적용금리대별 회원 분포 현황(%)²⁹

신용카드사	금리(%)											
	~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4~26	26~28	28~30	30~
롯데카드	20.9	3.4	6.1	9.1	9.5	8.5	9.8	0.4	16.6	0.1	15.5	-
비씨카드	-	0.7	0.6	1.6	59.3	1.4	0.7	1.0	34.7	-	-	-
삼성카드	3.1	0.4	1.4	4.9	5.5	10.1	14.4	14.0	10.1	18.9	17.1	-
신한카드	1.3	1.4	2.9	4.7	10.9	12.2	12.7	13.9	14.8	14.1	11.2	-
하나SK카드	3.6	1.3	1.0	3.6	3.1	13.4	9.6	17.5	27.3	19.5	-	-
현대카드	2.0	1.9	6.3	20.9	13.1	7.3	5.2	7.0	6.1	10.3	20.0	-
KB	13.8	6.7	9.9	6.4	6.0	8.7	9.6	9.2	3.1	8.3	18.5	-
SC제일은행	-	-	0.1	5.5	11.4	0.5	-	13.7	21.4	32.3	15.2	-
경남은행	-	0.2	2.8	-	5.4	-	-	9.3	82.3	-	-	-
광주은행	-	-	-	-	-	14.5	21.0	20.5	14.0	20.9	9.1	-
기업은행	0.0	-	3.5	6.8	4.8	25.4	21.4	-	16.6	21.5	-	-

28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공시 자료 2011.04.05게시

29 여신금융협회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2011.03.24게시 직전 월 중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대상

농협중앙회	14.4	3.6	1.0	2.7	11.4	9.1	5.9	14.1	36.2	1.6	0.0	-
대구은행	0.5	0.7	1.0	3.8	8.7	22.4	6.7	0.1	11.6	44.5	-	-
부산은행	0.2	0.6	1.8	-	2.8	19.0	-	-	13.7	61.8	-	-
수협중앙회	1.1	-	0.1	0.3	0.4	0.5	0.6	0.3	0.2	69.6	26.7	0.3
씨티은행	1.2	0.1	1.5	0.2	2.2	3.1	5.0	13.2	22.8	36.7	14.1	-
외환은행	1.4	1.9	1.7	3.9	5.0	6.8	7.2	18.6	12.3	17.8	23.5	-
우리은행	3.1	0.8	0.9	3.7	2.5	1.6	4.5	10.5	35.7	23.5	13.2	-
전북은행	-	-	-	3.1	0.3	0.4	0.4	0.4	90.6	4.7	-	-
제주은행	-	-	0.1	2.4	0.0	0.7	0.8	1.3	19.7	74.9	-	-

⑤ 대부업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42.3%에 이르며, 자산 100억 원의 대형 대부업체 들의 경우에는 신용대출 금리를 평균 43%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자산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가 전체 대부시장 대출규모에 86.9%를 차지³⁰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43%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 44%에 근접한 것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관행적인 고금리대출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 대부업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 금리 현황³¹

구 분		'09.12월말 (A)	'10.6월말 (B)	증 감 (B-A)
자산 100억 원 이 상	신용대출금	41,914	50,523	8,609
	금 리	41.7	43.0	1.3
	담보대출금	8,280	8,722	442
	금 리	12.1	12.4	0.3
자산 100억 원 미 만	신용대출금	3,028	2,497	△531
	금 리	36.6	32.3	△4.3
	담보대출금	2,127	2,528	401
	금 리	34.3	26.7	△7.6
개 인	신용대출금	1,503	1,519	16
	금 리	35.7	36.7	1.0
	담보대출금	2,262	2,369	107
	금 리	32.6	30.7	△1.9
합 계	신용대출금	46,445	54,539	8,094
	금 리	41.2	42.3	1.1
	담보대출금	12,669	13,619	950
	금 리	19.5	18.3	△1.2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대부업체 금리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대부금융협회, 경찰청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연평균 이자율은 224%에서 최대 69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2010.11.3 금융위원회

31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2010.11.3 금융위원회

<표22> 금융위원회 외 타 기관 대부업 이자율 조사현황(%)³²

금융감독원 사금융에로종합센터 민원신고	한국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 및 중재	경찰청(통보내역)
2008~2009년(2년간)	2009년 6~11월(6개월)	2007~2009년(3년간)
366.1	698.0	224.3

요약 하자면,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대출 금리는 15.22%이고 여신전문기관인 캐피탈사의 경우 평균금리가 24~29%대이고, 카드론 이자율은 최대 27.9%에 이르며, 현금서비스 역시 최대 28.8%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물론 각 금융기관의 상품에 따라 금리는 천차만별이지만, 캐피탈사와 카드사 모두 일정정도 이상의 대출금리 혹은 수수료 구간에 대출자들이 물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부업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무려 42.3%에 이르고 있는데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건에서 조사된 대부업관련 금리는 224~6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금융에로종합지원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사금융의 고금리로 인한 상담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에 대한 대부업의 고금리 압박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3> 사금융 관련 연도별·유형별 상담건수 및 수사기관 통보현황³³

(단위 : 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고 금 리	949	889	1,126	872	479	387	576	603	1,057(17%)	6,938(21%)
불법추심	187	489	760	551	374	295	450	679	972(16%)	4,757(14%)
등록·광고	214	505	151	7	483	254	244	360	312(5%)	2,530(8%)
중개수수료	31	114	51	9	73	69	156	272	319(5%)	1,094(3%)
기타부당 ¹⁾	350	405	240	410	484	510	348	322	814(14%)	3,883(12%)
단순상담 ²⁾	1,534	1,220	856	1,049	1,334	1,551	1,647	1,839	2,640(43%)	13,670(42%)
합계 (A)	3,265	3,622	3,184	2,898	3,227	3,066	3,421	4,075	6,114(100%)	32,872(100%)
수사기관통보(B)	591	312	206	359	148	39	57	82	101	1,895
통보율(B/A)	18%	8%	6%	12%	5%	1%	2%	2%	2%	6%

- * 1) 대출사기, 미등록 불법영업, 불공정 계약행위 등임
2) 가압류·경매·급여압류, 이자율한도 문의 등

살펴본 것과 같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자 명목이든, 수수료 명목이든 24~43%까지의 금리를 대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법에서 20%이하의 이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³⁴,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³⁵,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고시하

32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2011.3.17 감사원

33 <2009년 「사금융에로종합지원센터」 상담현황> 금융감독원 2010.3.24

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³⁶,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³⁷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³⁸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들이 대체로 제한이율을 범으로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대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표24> 국내 일반은행 이자이익 및 수수료 이익 추이³⁹

(백만원)

	2010	2009	2008	2007	2006
이자이익(A-B)	37,448,827	32,207,879	34,464,727	31,182,196	29,039,231
이자수익(A)	79,522,444	81,958,068	93,429,492	77,060,730	64,114,966
이자비용(B)	42,073,617	49,750,189	58,964,765	45,878,534	35,075,735
수수료이익(C-D)	4,070,486	3,912,190	4,187,400	4,691,054	3,794,241
수수료수익(C)	7,148,731	6,862,373	7,011,554	6,984,467	5,769,947
수수료비용(D)	3,078,245	2,950,183	2,824,154	2,293,413	1,975,706

각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높은 금리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표24>에 따르면 국내 일반은행⁴⁰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37조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5조 원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표25> 저축은행 이자이익 추이⁴¹

(백만원)

	2010.6	2009.6	2008.6	2007.6
이자이익(A-B)	2,905,351	2,287,496	2,428,100	2,553,289
이자수익(A)	6,994,373	6,321,103	5,436,216	4,867,148
이자비용(B)	4,089,022	4,033,607	3,008,116	2,313,859

34 25만 불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됨.

35 개인 목적 대차에 적용됨.

36 2006. 1/4분기 폭리 이자율은 1,524유로 이하인 경우 19.67%, 1,524유로 초과 당좌대월, 리볼빙, 할인판매인 경우 17.37%, 그 외의 경우 7.89%

37 가계대출의 경우 소비자대출과 당좌대월 두 가지로 집계되는데 2006년 9. 현재 소비자대출은 7.43%, 가계당좌대월은 11.03%임.

38 원본 10만엔 미만의 경우 연 20%, 원본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경우 18%, 원본 100만엔 이상의 경우 연 15%

39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40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41 저축은행 회계연도 하반기 결산 월(6월)기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표25>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이자이익이 전년에 비해 6천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이자 수익도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표26> 캐피탈사·신용카드사 영업이익 추이⁴²

회사	(백만원)		
	2010년12월	2009년12월	2008년12월
할부금융사	870,737	718,965	673,466
신용카드사	3,044,820	2,309,515	2,183,227

캐피탈사·신용카드사도 역시 영업이익이 2010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500억 원 6,5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사들이 위와 같이 높은 금리로 수천억, 수조원대의 이자이익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서민들의 생활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2010년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채가 있는 가구 중 71.8%가 원리금 지출이 부담스러운 지경에 처해있다. 그런데 이들 부채가구의 대출구조를 보면, 담보대출 중 42.1%, 신용대출 중 20.7%가 만기일상환방식의 대출구조를 취하고 있고 담보대출의 22.5%, 신용대출의 64.3%가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리금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가구들 중 상당수가 이자만을 내고 있음에도 원리금 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27> 원리금지출이 생계에 주는 부담(%)⁴³

전체	부담이 없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100.0	28.2	71.8	45.1	26.6

<표28> 가구특성별 담보 및 신용대출의 상환방법별 비중(%)⁴⁴

가구특성		상환방법별 비중(%)					
		전체	만기일시	원금 분할	원리금 분할	원리금분할 및 일부만기	기타*
전체	담보	100.0	42.1	11.4	16.4	7.6	22.5
	신용	100.0	20.7	5.1	6.9	3.1	64.3

* 마이너스 통장 등

4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43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한국은행 2010.12.29

44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한국은행 2010.12.29

즉, 개인금융부채가 1천조 원에 달해 가계부실 현실화가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도 각 금융기관들은 이익을 내는 것에만 몰두하며 대출 금리 및 수수료를 높게 유지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주요국들에서는 법에서 이자를 20%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4%로 잡고 있어 사실상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24~43%까지의 고리를 책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자산이 낮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 가혹한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며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과잉 마케팅·불완전판매_서민을 빛의 수렁으로 끌어 들이다.

금융권 전반에 걸친 고금리 문제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융권전반에 걸친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업권별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카드사

<표29> 연도별 카드사 모집인 추이⁴⁵

	'08말	'09말(A)	'10말(B)	증감(B-A)	(증감률)
모집인 계	5.2	3.5	5.0	1.5	(42.6)
(전업)	2.6	2.3	2.7	0.4	(17.4)
(제휴)	2.6	1.2	2.3	1.1	(91.7)

2010년 말 카드 모집인은 5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5만 명 증가 했다. 증가한 모집 인원 중 1.1 만 명은 전업 모집인이 아니라, 통신사 대리점 등의 제휴모집인이다. 이렇게 모집인이 증가한 데에는 2009년 11월 하나SK카드,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분사하면서 영업경쟁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2010년에 증가한 제휴모집인 1.1만 명은 하나SK카드의 SKT대리점 제휴모집인 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인이 늘어난 만큼,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05년 1조 3천억 원이었던 마케팅비용이 2010년 9월까지를 기준으로 5년 만에 3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카드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의 비율이 10.9%에서 24.5%까지 증가하였다.

45 <신용카드 시장 건진성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2011.3.30

<표30>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추이⁴⁶

	'05	'06	'07	'08	'09	'10.1~9
카드총수익(a, 조원)	11.9	12.5	13.5	15.6	16.1	12.6
마케팅비용(b, 조원)	1.3	1.8	2.6	3.1	3.3	3.1
마케팅비용률(b/a, %)	10.9	14.8	19.3	20.2	20.6	24.5

카드사들이 이렇게 모집인을 비롯한 마케팅비용을 늘리면서 민간의 소비지출에서 카드사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표31>에 따르면 2002년에 민간 소비지출 중 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였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57%에 달해 민간 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카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표32>에 따르면 3매 이상의 복수카드 소지자도 2011년 2월말 기준으로 1,396만 명으로 전체 카드 소지자의 절반의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표31>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⁴⁷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이용금액	6,229.1	4,805.4	3,578.5	3,638.2	3,682.7	3,981.8	4,453.0	4,543.9	4,938.3
(증가율)	(40.5)	(-22.9)	(-25.5)	(1.7)	(1.2)	(8.1)	(11.8)	(2.0)	(8.7)
이용금액(A)*	1,740.5	1,705.3	1,671.0	1,904.7	2,148.2	2,410.8	2,793.1	3,039.4	3,506.9
(증가율)	(29.7)	(-2.0)	(-2.0)	(14.0)	(12.8)	(12.2)	(15.9)	(8.8)	(15.4)
민간소비지출(B)	4,087.1	4,200.9	4,350.6	4,654.3	4,949.1	5,302.6	5,616.2	5,759.7	6,154.0
A/B	42.6	40.6	38.4	40.9	43.4	45.5	49.7	52.8	57.0

*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제외

<표32> 신용카드 매수별 소지현황('11.2월말 현재)⁴⁸

(단위: 만 명, %)

	계	1매	2매	3매이상
인원(비중)	2,545 (100)	615 (24.2)	534 (21.0)	1,396 (54.8)

문제는 이렇게 카드사들의 모집인 증가, 마케팅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불법 영업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저신용층에 대한 카드 발급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꾸린 합동점검기동반의 불법 영업행위 적발건수는 2009년 27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6건으로 증가했으며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층 회원도

46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 금융감독원 2011.2.9

47 <신용카드 업계현황> 여신금융협회 2010.12

48 <신용카드 업계현황> 여신금융협회 2010.12

2010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카드는 26.1%에서 26.9%로, 현금서비스는 34.9%에서 38.0%로 증가 하였다.⁴⁹

① 카드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카드 이용, 특히 현금대출의 증가에 중심에는 카드론이 자리하고 있다. 카드론의 경우 2010년 이용실적이 전년대비 42.3%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카드사들이 중소기업 수수료율 인하 등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현금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금서비스 보다 카드론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금서비스가 다음 달 바로 결제해야 하는 단기 사용이고, 미사용 한도⁵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반면에 카드론은 만기가 길어 카드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고, 미사용 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없는 것에 비해 또한 카드론은 취급수수료 폐지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확대 되었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의 현금대출에 대한 추가 확대 여력(부대업무 비중 규제비율⁵¹ 40%미만)이 존재하고 있어 카드사들이 카드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⁵²

위와 같이 카드사들의 카드론 판매가 격화되다보니, 오히려 카드 사용자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과다채무자의 59.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과다채무자의 카드론 이용비율이 13.96%인 것에 비교하면 4배나 높은 수치이다.⁵³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낮은(7~10등급) 회원에 대한 카드론 비중도 증가하였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26.1%)에 비해 0.8%증가(26.9%) 했으며,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7~10등급 회원에 대한 2010년 4분기 카드론 액수는 5조 6,100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4조6731억 원)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에 비해 규제가 적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카드론 판매의 확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신용 리스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49 <신용카드 시장 건진성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2011.3.30

50 대출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

51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5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의 기준으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신용판매 채권등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할수 없음을 이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인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에 치중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임

52 <신용카드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손익 민감도 분석> 한국신용평가 위지원 수석애널리스트 2011.02.24

53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과다 채무자 특성분석> NICE Credit Insight 2010.3.31

② 리볼빙

<표33> 리볼빙 서비스 이용현황⁵⁴

(단위: 조원, 만명, %)

구 분	'07말	'08말 (증감률)	'09말 (증감률)	'10말 (증감률)
총 카드채권잔액(A)	60.3	65.9 (9.5)	66.9 (0.3)	76.6 (7.7)
리볼빙 이용잔액(B)	3.5	5.0 (42.3)	5.1 (1.7)	5.5 (7.8)
<총 채권 대비 비중=B/A>	<5.8>	<7.6> -	<7.6> -	<7.1> -
총 카드회원(C)	6,608	7,351 (11.2)	7,795 (6.0)	8,428 (8.1)
리볼빙 이용회원(D)	188	251 (33.5)	247 (Δ1.6)	273 (10.5)
<전체 회원대비 비중=D/C>	<2.8>	<3.4> -	<3.2> -	<3.2> -

또한 카드사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리볼빙의 경우 2010년 이용 잔액(5.5조원)이 '09년(5.1조원) 대비 7.8%(0.4조원) 증가 했으며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도 '10년 말 현재 273만 명으로 '09년 말(247만 명) 대비 10.5%(26만 명) 증가했다. 더불어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약정회원은 '10년 말 현재 1,607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리볼빙서비스가 이용자들이 연체 없이 할부판매대금이나 현금서비스 대출금액 상환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금결제 장기화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단기 상환부담 완화로 카드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리볼빙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안내도 미흡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⁵⁵

<표34>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 현황⁵⁶

신용카드사	리볼빙	
	일시불	현금서비스
롯데카드	7.89~25.39	7.89~28.19
비씨카드	-	-
산은캐피탈	-	-
삼성카드	7.90~25.90	7.90~28.50
신한카드	8.34~26.84	8.34~26.84
하나SK카드	5.90~26.90	6.90~27.90
현대카드	6.50~27.50	6.50~27.50
KB	7.90~28.80	7.90~28.80
SC제일은행	11~21.9	12.9~28.5

54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및 고객 권익 강화 지도> 금융감독원 2011.03.04

55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및 고객 권익 강화 지도> 금융감독원 2011.03.04

56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공시 자료 2011.04.05제시

경남은행	9.95~20.95	14.95~25.95
광주은행	-	-
기업은행	9.9~21.9	13.9~25.9
농협중앙회	9.40~24.85	9.40~24.85
부산은행	9.50~22.00	11.95~27.70
수협중앙회	-	-
씨티은행	9.90~28.30	9.90~28.30
외환은행	7.15~26.50	7.79~28.74
우리은행	9.9~21.9	9.2~27.4
전북은행	19.0	14.0~26.31
제주은행	14.50~22.5	14.50~26.00

실제로 희망결제비율⁵⁷ 을 100%로 설정한 회원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되는데, <표34>에 따르면 리볼빙은 연 6.5~28.74%의 수수료를 물어야 함에도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아 고객은 리볼빙 이용 여부를 모르고 있다 추후 카드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⁵⁸

또한 리볼빙 서비스는 보통 6~7등급 이상의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데 신용도가 하락하면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동시에 리볼빙 서비스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한다. 특히 현금서비스를 리볼빙하는 경우 장기간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수수료 부담도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리볼빙 수수료까지 더해져 사실상 약탈적 대출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카드사의 입장에서 리볼빙 이용 잔액은 가계채무상환능력 악화시 일시에 부실화될 소지가 있어 위험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으로 리볼빙 이용 잔액 중 저신용층(9~10등급)의 비중이 36.4%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페이프리, 스마트리볼빙, 자유결제 등으로 본질을 가리는 명칭으로 바꾸어 서민들을 수수료의 덫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카드사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자신들의 마진을 최대한 높이는 대신 리스크는 회원들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불완전 판매를 통해 마진을 끌어올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부채 수준에 직면한 서민가계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2) 대부업

대부업은 대표적으로 평균 43%~698%의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대부업체와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10.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57 결제대상금액 중 매월 결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비율

58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및 고객 권익 강화 지도> 금융감독원 2011.03.04

는 15,380개사로 '09.12월말(14,783개)과 비교해 6개월만에 4.0%(597개) 증가했다.

<표35> 대부업체 등록현황⁵⁹

(단위 : 개)

구 분	'09.12월말 (A)	'10.6월말 (B)	증 감 (B-A)	
	등록	등록	등록	
법인	83	101	18	
개인	1,268	1,542	274	
개 인	13,432	13,737	305	
합 계	14,783	15,380	597	

<표36>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⁶⁰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09.3월말	'09.12월말	'10.6월말	증 감 (율)	'09.3월말	'09.12월말	'10.6월말	증 감 (율)	
자산 100억원 이상	1,188,787	1,390,891	1,673,983	283,092 (20.4)	44,202	50,194	59,245	9,051 (18.0)	
자산 100억원 미만	79,570	113,504	65,856	△47,648 (△20)	3,637	5,155	5,025	△130 (△2.5)	
개 인	163,279	170,042	153,696	△16,346 (△9.6)	3,737	3,765	3,888	123 (3.3)	
합 계	1,431,656	1,674,437	1,893,535	219,098 (13.1)	51,576	59,114	68,158	9,044 (15.3)	

<표36>에 따르면 대출금액의 경우에도 2010년 6월말 기준, 6,946개 대부업체가 189만 명에게 총 6조 8,158억 원을 대출했는데, 이는 2009년 12월말과 비교해서 대출금은 15.3%(거래자는 13.1% (219,098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이 5조 4,539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6조 8,158억 원)의 80.0%를 차지해 '09.12월말 대비 17.4% 증가하였다.

<표37> 대출 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⁶¹

(단위 : 억 원, %)

직 업	대출목적					계 (점유비)
	사업자금	타대출상환	물품구매	생활비	기타	
회사원	675	1,216	408	4,866	1,816	8,981 (57.5)
공무원	19	64	16	249	68	416 (2.7)
자영업	1,532	281	90	804	556	3,263 (20.9)
학생·주부	104	152	34	682	394	1,366 (8.7)
기 타	871	36	90	202	396	1,595 (10.2)
합 계	3,201	1,749	638	6,803	3,230	15,621 (100.0)

59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2010.11.3 금융위원회

60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2010.11.3 금융위원회

61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2010.11.3 금융위원회

※ 생활비 점유비 : 28.2%(‘09.3월말) → 33.5%(‘09.12월말) → 43.6%(‘10.6월말)

이 같은 사정은 <표37>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대출 목적 별 신규대출 규모를 보면, 생활비와 사업자금조달이 63.6%에 이른다. 특히 생활비가 대부업 대출목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월말 28.2%에서 2010년 6월말 43.6%로 증가하여 최근 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대부업 규모의 증가는 어려워진 서민가계의 생활 형편에 많은 부분 기인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으로 대부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이 지목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마케팅은 케이블 TV 광고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2010년 상반기 동안 주요 케이블TV 채널 33곳 가운데 하루 평균 50회 이상 대부업체 광고를 편성한 채널은 QTV, 리얼TV, 코미디TV 등 3곳이며 40회 이상 편성한 채널은 MBC스포츠플러스(48.5회), SBS E!TV(47회), CNTV(45.4회), OCN·드라마스(각40회) 등 인 것으로 드러났다.⁶² 이중 대부업 광고를 하루 평균 48회 이상 편성한 QTV, 리얼TV, 코미디TV, MBC스포츠플러스의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꼴로 대부업체 광고를 내보낸 셈이다.

이렇게 케이블TV의 광고 등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부업 광고는 그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다. 특히 30일간 이자를 면제해 준다던지, 한 달간 이자를 절반만 받겠다던지 하는 내용의 광고는 무이자든, 절반 이자든 상관없이 대부업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고금리로 인해 부채가 급속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 신용조회 기록뿐만 아니라 대출 사용기록이 남게 되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제한된다는 현실을 숨긴 채 고객을 확보하려는 대부업체의 미끼 광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2006년 기준으로 대부업을 포함한 사금융채무보유자(2,224명)의 과반수(67%)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정상거래자⁶³로서,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업이용자들이 모두 채무불이행자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부업시장에 밀려들어갔다가 보다도 금리가 조금 더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대부업체의 미끼광고에 의해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이후 대부업 대출 기록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제2금융기관으로 회복해 오지 못하거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62 <케이블 TV 하루 50회 대부업 광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실 2010.09.07

63 <06년 사금융이용자 설문결과> 금감원 2007.5.7

3) 불법 대부업_서민가계 노린 약탈적 고리대금업자

고금리와 과잉 마케팅으로 서민을 빚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대부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등록 대부업, 즉 불법 대부업에 있다. 실제 2009년 기준으로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 요청한 1,057건 중 96%에 달하는 1,019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으며,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의 53%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미등록 불법영업에 대한 상담건수는 2008년에 비해 2.5배 늘어나 814건을 차지했다.

<표38> 주요 유형별 상담현황(등록·미등록 구분)⁶⁴

(단위 : 건,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고금리 수취		387(100)	576(100)	603(100)	1,057(100)
	등록	40(10)	125(22)	11(2)	38(4)
	미등록	347(90)	451(78)	592(98)	1,019(96)
불법 채권추심		295(100)	450(100)	679(100)	972(100)
	등록	145(49)	215(48)	323(48)	456(47)
	미등록	150(51)	235(52)	356(52)	516(53)

이렇게 증가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최대 698%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채권 추심도 만연해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표39>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실적 중 미등록 대부업 관련⁶⁵

(단위 : 건, %)

구 분	09년(a)		10년(b)		대 출 금	
	적발건수	수사의뢰	적발건수	수사의뢰	적발건수	수사의뢰
미등록 대부업 영위	156	156	277	277	121(77.6)	121(77.6)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불법 금융광고 적발실적 중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관련해서 적발 건수와 수사의뢰 건수가 1년 사이 모두 77%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이 고리의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주체는 행정기관인 각 시·도 자치단체장이며, 정부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그 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사

64 <2009년 「사금융에러종합지원센터」 상담현황> 금감원 2010.3.24

65 금융감독원

법기관이 불법채권추심이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분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경실련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였으며, 광역단체에 담당부서나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충북도, 충남도, 전북도)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업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시·도별로 지방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존재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표40> 지자체별 등록대부업체 및 담당자 수⁶⁶

지역명	등록업체 수	기초자치단체 위임 여부	대부업체 담당자 수 (시·도내)	1인당 담당업체 수	비고
서울	6,196개	×	7명	885개	유일하게 전담부서가 존재함
부산	1,342개	×	2명	671개	
대구	1,002개	○	9명	111개	8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 업무 수행, 광역단체는 총괄업무 수행
인천	763개	○	11명	69개	10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 업무 수행, 광역단체는 총괄업무 수행
광주	433개	○	6명	72개	5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 업무 수행, 광역단체는 총괄업무 수행
대전	515개	×	2명	258개	
울산	366개	×	1명	366개	
경기	3,633개	○	38명	96개	30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 업무수행, 광역단체 총괄업무 미수행
강원	431개	×	1명	431개	
충북	371개	○	11명	34개	12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업무 수행, 광역단체 총괄업무 미수행
충남	389개	○	14명	28개	16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업무 수행, 광역단체 총괄업무 미수행
전북	683개	○	10명	68개	14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업무 수행, 광역단체 총괄업무 미수행
전남	362개	○	23명	16개	광역단체 총괄업무 미수행
경북	509개	×	2명	255개	올해 안으로 기초단체에 위임예정.
경남	917개	○	21명	44개	20개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 업무 수행, 광역단체에서는 총괄.
제주	89개	○	3명	30개	
총합	18,001개		161명	112개(16개 시도의 1인당 평균 담당업체 수) ※ 기초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지역의 1인당 평균 담당업체 수: 624개	

66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경실련 2008.12.17

결론 및 과제 : 빛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결론 및 과제 : 빛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1)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_서민을 약탈적 폭리의 늪에서 구제해야

① 이자제한법 개정_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앞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개인금융부채가 1천조 원에 달해 가계부실 현실화가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 각 금융기관들은 이자 명목이든, 수수료 명목이든 24~43%까지의 금리를 대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대출자들이 높은 이자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각 금융기관들이 가계의 현실을 생각한 다기 보다는 이익을 내는 것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의 현행 최고 이자제한율이 44%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업법에서는 50%까지, 시행령으로는 44%로 최고이자율을 규정)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정부가 사실상 폭리를 허용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41> 주요국 금리상한 규제 현황⁶⁷

국가명	금리상한 규제의 현황
일본	2010.6.18 시행 최고금리 20% 통일 위반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병과
미국	주별 상한금리 : 민사 제한 이자율 - 최저 5%(미시건 등) ~ 최고 16%(뉴욕) - 주별 상한금리의 평균: 연 8.14% 주별 상한금리 : 형사 제한 이자율 - 20%(메사추세츠), 25%(뉴욕), 30%(뉴저지) 불법 고금리 적발시 전체 대출잔액의 이자 및 원금몰수
독일	전당포 대부금리 상한은 연 12% - 초과시 연 2.500유로의 과태료 폭리기준: 시장금리의 2배를 초과 하거나 시장금리 보다 12% 초과 (연 30~40%)
프랑스	폭리기준: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전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1/3 더 높은 수준

<표41>를 통해 보아도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이자상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30~40%의 고금리는 주요국에서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자제한법에

67 <이슈브리프 : 서민금융 현황과 과제> 여의도연구소 2010.12.16

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도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한을 높게 설정해 둔 것일 뿐이고, 대통령령에서 앞서 살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최고이자율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하여 시행령 상 제한이율을 연 30%로 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인하지 않고 있다. 즉, 이자제한법의 상한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져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여 고금리를 받고 있어 한국의 서민들은 다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에 비하여도 훨씬 가혹한 금융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종전의 이자제한법 운영 기준⁶⁸ 처럼 연 25%정도로 폭리상한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참여연대에서 지난 해 9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② 대부업법 개정_대부업 특혜금리 중단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일본의 대금업규제법을 참고하여 제정한 법인데, 일본은 일반적인 이자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 양성화를 위하여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대금업 등록을 한 사채업자에게는 특별히 특례고금리를 인정하는 유인책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사채업 양성화를 최대한 유도하면서 특례고금리를 점차 낮추어 오다가 2006. 12. 일본 국회는 드디어 일정한 유예기간(최장 3년 6개월)을 둔 후에 특례고금리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일본에서 개인 대상의 대부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한 개인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부 대금업자들은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할 뿐 아니라 연체 시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금리로 인한 개인 소비자 피해 및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본 금융청이 2006. 4. 대금업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의 개인 대출 상한금리인 29.2%를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 금리인 연 15%~20%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68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변천 내역

- 62. 1 : 이자제한법 제정(연 20%)
- 65. 9 : 이자제한법 개정(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연 36.5%)
- 72. 8 : 대통령령 개정(연 25%)
- 80. 1 : 대통령령 개정(연 40%)
- 83. 12 : 대통령령 개정(연 25%)
- 97. 12 : 대통령령 개정(연 40%)
- 98. 1 : 이자제한법 폐지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업법은 일반적인 이자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되었기 때문에 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 불법적인 고금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속과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적인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에서 다시 연 10%의 특혜금리를 추가하여 등록대부업자에게 연 40%의 최고이자율을 인정한다면, 이는 시장 평균이자율,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각국의 금리상한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사금융 시장은 제도권 금융시장과 분리된 시장으로서 불완전경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업체는 우량고객에 대하여 독점력을 바탕으로 고금리 부과를 통한 이윤획득이 가능하므로, 금리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사금융시장 이용자가 위험프리미엄 이상의 과도한 고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 폭리제한선을 20% 정도로 낮춘다면 이와 연동하여 대부업법상의 특혜금리를 유지하되 특혜금리 폐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현재와 같이 일반 폭리금리 상한선을 30%의 높은 수준으로 고수한다면 더 이상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즉, 우선적으로는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본법과 시행령을 통해 연리 30% 이하로 끌어내려야 하고(정부여당은 6월 즈음에 39%로 인하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역시 폭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한 시한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대부업 특혜 금리를 폐지하여 이자제한법 상 본법의 최고 이자율을 넘을 수 없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이자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문명 국가'에서 영원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2) 여신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_감독체계 구축 및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 판매 차단

① 신용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로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카드사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도 리스크는 사용자들에게 떠넘기는 형태의 상품 판매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카드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이러한 카드사들의 행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화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금융당국은 특히 카드론(카드 대출)의 급증과 카드 대출 중 신용등급 하위 등급 회원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같은 달 <리빙서비스 리스크 관리 및 고객 권익 강화 지도>를 발표하고 리빙 서비스와 관련 고객에 대한 안내와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종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금융당국이 나서서 카드사들의 영업 및 상품판매 행위에 대해 조사와 지도를 강화하

겠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금융당국이 사전적으로 카드사들을 관리 감독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늘 사후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건이 불거질 때 마다 지시·지도의 입장을 내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하기위해 신용카드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지인 미국의 경우를 사례로 꼽을 수 있겠는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카드사에서 빈번하게 벌어졌던 임의적 이자율 인상, 과도한 수수료 편취 및 연체이자 부과, 불충분한 카드 명세 설명 등을 바로 잡을 신용카드 개혁법(The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1.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2. 고이율 채무 우선 변제 3. 타사 채무연체 시 자사 채무에 대한 금리 인상 금지 3. 자의적 이자율 인상 금지 등이다. 또한 신용카드 업계 약관상 규정을 입법화 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은 2000년대 초반 벌어진 카드대란으로 인해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미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개혁 법안에 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⁶⁹ 일리는 있을 것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래도 여전히 불완전 판매 및 과당 경쟁에 대한 피해사태가 공적인 민원 센터로 접수되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금융감독 당국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전히 사전 관리 감독이 아닌 사후 지시·지도 형식이라는 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신용카드개혁법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신용카드와 관련해 미국과 같이 관리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카드업계의 약관상 규정 중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② 불법 대부업체 관리 감독체계 개선

불법 대부업체와 불법 다단계업체는 대표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영역이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대부업체나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수사체계를 가동하지 않고 감독관청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태도이고 불법 대부업 문제의 경우 감독관청인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는 자신들은 원래 금융기관 감독기능이 없었는데, 대부업을 만들며 금감원이 역지로 감독기능을 떠넘겼다며 얼마 전까지도 전담 감독담당 공무원도 배치하지 않을 정도로 대부업체 감독에 소극적이었고 지금도 자신들의 업무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감독에 한정되지 불법대부업체까지 단속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출액 70억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감독대상이지 일반 대부업체는 아예 감독대상도 아니라는 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된 70여개의 다단계업체만

69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돌아본 국내 신용카드산업 현황 및 향후전망> 금감원 김영기 팀장 2009.12

감독대상이지 수많은 불법 다단계업체는 자신들의 감독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태도와 유사하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기관도 불법 대부업체의 감독과 단속을 자신의 전담업무로 보지 않고 있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을 총망라하여 불법 대부업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 이러한 대책협의회를 통하여 대대적 단속을 하였으나, 이러한 여러 행정기관의 임시방편적 대책협의회 활동이 오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지금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행정 감독·단속 체계는 다시 느슨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1)대부업 등록 및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되, 2)지역에 산재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을 배치하도록 하며, 3)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이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연수, 행정지침, 수사지침 작성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지원하고, 4)정기적으로 그 감독·단속·수사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금융감독, 업계 리스크 관리에서 이젠 소비자 보호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약탈적 고금리 문제와 과잉 마케팅 그리고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증가 하고 있는 한국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간의 한국의 금융감독은 금융업계의 건전성 즉,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 더욱 복잡해지는 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의 확립을 더 이상 뒤로 미루어 둘 때가 아닌 것이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다. 금융당국은 201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초 법안 제정을 목표로 현재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초안에서는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 2)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 3) 상품 판매채널의 재분류 4) 고수익 금융상품 계약해지권과 집단소송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기본 체계가 잡힐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했으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두 빠진 채, 상품 판매채널을 재분류 하겠다는 부분만 남아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 시킨다고 한

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설립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체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서 소비자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이하 CFPA)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의 내용은 (1)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2)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기망, 차별, 남용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3)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4)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소비자금융보호청에서 대출, 저축,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와 카드사, 모기지사 등 이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다.⁷⁰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규제청을 외부에 따로 두어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하는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 보다 먼저 소비자 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리한 바 있는데, 호주는 호주건전성규제청(APRA)이 미시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며 중앙은행(RBA)이 금융규제협의회의 의장을 담당해 상호 협조 속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시장청(AFM)에서 맡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와 건전성 관리 감독을 위한 기구를 분리해 놓고 있다.⁷¹

한국의 경우에도 폭리와 불완전 판매, 소비자 소외 등이 고질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 기구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가계 경제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피해가 불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해 안에 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기존의 금융감독 기관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크스를 감독하는 데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상품판매와 이로 인한 피해 구제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발의 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대부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하나 지자체에 위임 해놓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력 배치를 하지 않아 단속은 커녕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한

70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한국금융연구원 2009.8

71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조화를 위한 금융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 2010.9.25

국도 최근 미국에서 설립된 것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청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2009년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는데, 관련 법률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 손해배상청구권 · 집단소송제도 도입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진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면 불합리한 금융상품의 가입과 운영으로 위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불합리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완전 판매나 미끼 광고를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들의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금융사들이 상품을 운영하면서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 판매나 상품의 부실 제도·운용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운영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게 되는 금융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혹은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운영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익에 집착하는 금융이 아닌, 금융 공공성을 고민할 때 :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1977년 카터 정부 때부터 소득과 인종에 따른 금융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금융기관들이 일정액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조사하고 이들이 자산 규모에 따라 빈곤층과 소기업에 대한 대출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출을 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용을 얻는 것은 기본권이며 소외층에게 대출을 하는 것을 금융의 공적인 기능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노력은 당연히 미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 등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등도 아주 작은 액수의 자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빈곤층에게 빌려주어 자활을 돕고 있는데, 지역 주민공동체의 상호책임에 기반을 두어 높은 회수율을 보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급증하는 부채에 고금리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 때, 금융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친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이름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출범시켰으나 다음의 몇 가지 논란으로 인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① 관치금융논란

관치금융 논란은 1) 정부출연기금은 전혀 없이 기업과 은행들을 쥐어짜서 기금을 만들고 있다는 점 2)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을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방식 3) 여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신규 사업단체에게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지역시민운동으로 출발한 것이지, 금융 사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지역시민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십분 활용해야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기존의 금융기관의 마인드나 금융사업 방식으로는 자리를 잡거나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② 서민금융의 취지에서 벗어난 대출요건

한국의 서민금융의 경우 대출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사업실적이 저조 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요건과 관련해서는 신용등급 7-10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6등급 이상의 신용자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창업자금의 경우 50%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보유재산이 8,500만원(대도시의 경우 135,000,000원)이어야 하며,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50%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운영·시설자금을 대출해 주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도 9개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대상도 애초의 논의에서처럼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 파산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및 청년가장 등은 지원 대상에 빠져 있다.⁷² 이와 같이 엄격한 대출요건으로 인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13일까지 한 달간 상담방문자 5,872명 중 대출가능자로 분류된 사람은 33%인 1,938명이었고, 본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3%인 20명에 대출금 총액은 9,800억 원에 불과하다. 너무나 초라한 실적을 넘어 사실상 그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③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위원회가 2009.10.12.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소금융재단의 올해 수입 예산은

72 미소금융이 지원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은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자활추진단체에 대한 공동대출 등이다.

휴먼예금 등을 바탕으로 총 476억 원인데, 재단운영비만 36억 원으로 전체 사업예산 440억 원의 8.2%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재단 사무처장 연봉이 1억260만 원 이상이고 1급 팀장은 7,700만 원 이상, 일반직원은 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예산이 11억 7천만 원인데 직원이 16명이므로 1인당 평균급여가 약7,300만 원 정도인 것이다.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수당도 8차례 참석에 총 3,180만원으로 이사회 참석시마다 1인당 40-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결의로 대체하고도 1인당 20-30만원씩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운동처럼 실업자·저소득층 등 우리사회 밑바닥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생계형 신용대출을 통하여 이들의 자활을 돕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경제의 안정 기반을 다지는 정책목표와 활동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기초해야 할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일반 금융기관처럼 고액연봉의 수익사업체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로 인해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핵심근거와 방식이 자활의지가 높고 상환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생계형 자활을 도와 실업문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회수가능성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인 만큼 대출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사회연대은행, 신나라 조합 등의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목표액을 정해 놓고 대출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은 지양 하도록 해야 한다. 실적을 위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하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미소금융 등이 현재 이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다.

더불어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도 97년 외환위기 당시 서민들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되었던 만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같이 일정정도의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금융전반에 걸쳐 은행지점 등에 대해 수익성 위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에 서민들에 대한 대출실적을 반영 하는 등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자금배분이라는 공공성 측면의 평가를 함께 하는 것을 그 출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17대 국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1) 금융기관이 공익적 업무에 관한 지침을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공익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2) 공익적 업무에 대한 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장 소속하에 금융기관의 공익적 업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3) 금융기관 등의 공익적 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은 중소기업·여성·장애인·고령자·편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지역경제에 대한 여신 및 금융서비스 정도 등 경제적 측면, 기부·윤리경영·원활한 노사관계 정도 등 사회적 측면, 친환경 기업·기술 등에 금융지원 등 환경적 측면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 등으로,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이 침체된 바, 금융기관

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17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어 사실상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18대 국회 들어 오히려 후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구체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5) 무엇보다도 적절한 민생대책과 함께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

지금까지의 대안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개별 가계들에게 여신을 잘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1) 어떻게 하면 가계의 필수적 지출 중 공공분야의 부담을 줄여주고, 2) 저축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가계들이 소득이 줄고 있음에도 지출이 줄지 못하는 것은 교육·주거·의료·교통·통신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과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공공이 책임져 주어야 할 부분들이 모두 개별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의 가계부채와 민생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수적인 가계 지출 중에서 주거, 교육, 의료, 통신비 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동시에, 시급히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① 주거 분야에 있어서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첫째,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 전세대란을 예방하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거비 직접보조 사업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부활시키고 확대시켜야 한다. 그래야 역시 전세대란도 예방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시킬 수 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갱신 시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 역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②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는 정책은 물론이고, 등록금 등 공적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무려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됐는데, 거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됐다니 실

제 자녀 1인당 3억 안팎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가계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또 교육개발연구원 조사결과 국민의 43%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이러니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출산율이 마침내 세계 꼴지가 돼버린 것이다.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살기 위해서 ‘저출산’과 ‘저소비’를 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와 내수경기 침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무엇보다도 대학교육까지 무상 교육을 추진해나가되, 지금 당장은 현 정부여당이 수십 차례 약속한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1년 등록금만 천 만 원 안팎에 여타 교육비와 생활비, 주거비까지 하면 1년에 무려 3천만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면 3조~4조원의 예산이면 ‘반값 등록금’을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학교에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구현해 교육의 질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대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로 의무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쟁위주, 서열심화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존속·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사교육을 유발하는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③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지출하고 있는 ‘본인 부담금’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의료 확대 또는 국민 의료비 지원 확대 정책들을 정부여당이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역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통신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서민생활비 30% 인하를 공약한 바 있지만, 오히려 20~30% 더 인상됐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한 것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이통 3사들은 호시절이다. 2010년 한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깝다.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섰다. 그렇게 재벌·대기업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주머니는 쓸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대로 이동통신요금이 최소 20% 이상 대폭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기에 정부는 더욱 부담 없이 이 일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공약을 제대

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제4사업자 후보들이 지금의 요금 수준에서 20~30% 정도의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통 3사가 폭리를 취하고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 부담 완화가 매우 시급하다.

6) 정부의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필수적인 가계지출의 경우에는 일정정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야 말로, 개별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부채 상환 능력도 증대 되어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작금 물가급등, 전세대란, 가계부채·이자폭리, 과도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부담, 미친 등록금의 나라, 노후와 일자리 불안, 실업과 비정규 문제, 미약한 사회복지 문제 등등, 삶 전반을 위협하는 온갖 민생고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이는 각종 조사나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 4대강 죽이기 사업, 부동산 경기 부양, 재벌대기업 편향정책에 쏟았던 집착의 조금만이라도 서민경제를 위해 썼다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가계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 주거, 의료, 통신비 문제에 대한 최우선적인 예산 지원, 관련 정책 수립, 사회적 공론 형성에 나섰다면 가계의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담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서민금융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뭇든지 빚으로 해결하라거나, 금융기관들의 사업성과 폭리를 보장해주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정책 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4월 17일 발표한 '서민금융 종합대책'에서도 빚을 늘려주기 위한 대책은 있으나, 가계의 재산을 어떻게 늘려서 빚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현재 한국의 가계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를 넘을 정도로 상시적이고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빚을 더 내주는 정책을 펼치니 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적자와 부채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인 것이다. 즉,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경제를 걱정한다면 빚을 더 내주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에서 언급한 각종 공적 부담부터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와 폭리를 근절하는 정책,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 과 같은 매칭펀드 등을 통해 저축을 장려하여 실제 서민가계가 빚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10503 <한국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 II>

발 간 일 | 2011. 05. 03 (총 42 쪽)

공동대표 |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김진욱 간사 02-723-5302, oso@pspd.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